

남녀차별대우 취업규칙 보험·증권사 일방개정 말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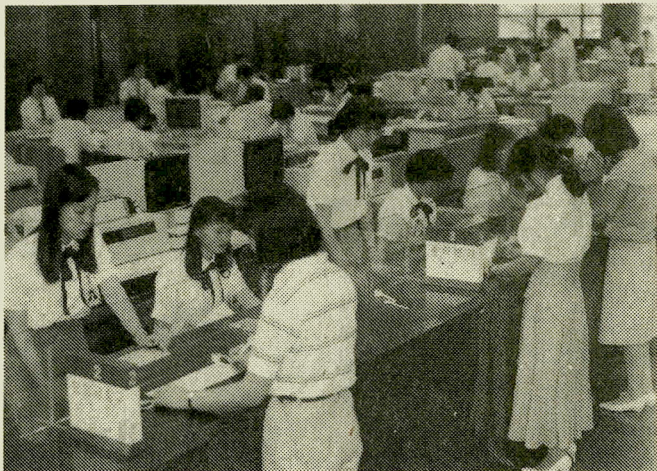
노조 “협의 안거친데다 성차별 존속”

보험·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남녀차별 취업규칙 개정을 둘러싸고 노사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일부 보험·증권사에서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바꿔 노동부에 보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2금융권 노동조합들이 회사쪽에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지난 4월10일 “제2금융권 71곳에 대해 5월말까지 여사원제, 성별분리호봉제 등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는 성차별적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6월20일을 기준으로 형사처벌하겠다”고 강경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 대부분이 지난 4일을 앞뒤로 노동부에 취업규칙 개편안을 보고했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취지에 맞게 직제

를 개편한 대한투자신탁·외환신탁·용카드·비씨카드와 현재 노사협의중인 대한교육보험 등을 제외한 30여개 증권·보험사에서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마련한 것이어서 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쪽의 의견을 첨부할 것을 요구받았다.

회사쪽에서 노동부에 개편안을 낸 것조차 모르고 있다가 노동부의 노조 의견 첨부 요구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제2금융권 노동조합들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노사합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근로기준법 제94조와 95조 1, 2항을 회사쪽이 어긴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원인무효를 선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취업규칙의 내용이 △여성을 대리까지만 진급이 가능한 하위직에 배치하는 신인사제도를 도입하거나 △남자



임금, 승진 등에서 남녀차별이 심각한 보험·증권사 등 제2금융권이 남녀차별 취업규칙 개정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사진은 대한교육보험 영업장.

고졸사원의 초임호봉을 여자 고졸사원의 초임호봉으로 하향조정하고 기존 직원의 임금은 여전히 남녀차별형태를 취하는 등 근로조건 저하와 성차별적 요소를 존속시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제2금융권 노조의 반발이 거세자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지난 11일 노동부에 공문을 보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노사 합의에 의한 취업규칙변경원칙’을 무시한 제2금융권의 처사

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취업규칙 내용 또한 교육·배치·승진의 기회균등이 핵심인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배하고 있다”며 즉각 반려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제2금융권 노동조합들은 노동부가 회사쪽에서 마련해 제출한 취업규칙 개편안을 반려하지 않을 경우 회사대표를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조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신연숙 기자**